2025년도 제7차 이사회

2025. 9. 1.



목 차

| l. 보고사항 |
|--------------------------------------|
| 1. 전차 회의록 초록1 |
| |
| Ⅱ. 심의사항 |
| 1. 2026 제20회 아이차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방안 2 |
| 2.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개정안5 |
|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6 |
| 4. 장애물 심판 자격 부여안15 |
| |
| Ⅲ. 기타사항 |

보고사항

| 안건번호 | 의결 연월일 | 소관회의 |
|----------------|-------------|-------------------|
| 제7차 이사회-보고-제1호 | 2025. 9. 1. |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1 전차 회의록 초록

- 2025년도 제6차 이사회는 2025년 7월 8일 16시에 대한장애인체육회사무처 대회의실과 화상회의(ZOOM)로 재적 임원 20명중 12명 참석으로개최되었습니다.
- ㅇ 보고사항으로
 - 1) 전차 회의록 초록: 원안 접수
 - 2)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원안 접수
- ㅇ 심의사항으로
 - 1) 종합마술 심판 자격 부여: 원안 승인
 - 2) 공인심판 관리 시행 세칙 개정안: 원안 승인
 - 3) 2025년도 하반기 사업 운영 계획안: 원안 수정 승인
 - 4) 상근 임원 보수 규정 제정안: 원안 승인
 - 5) 대한승마협회 체육인 인권보호 규정 제정안: 원안 승인
 - 6) 말복지위원회 신설 운영안: 원안 승인
- ㅇ 기타안건으로
 - 1) 국가대표팀 의무 차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의결
 - 2) 제주체전 점검단 구성: 회장께 위임 의결

심의사항

| 안건번호 | 의결 연월일 | 소관회의 |
|----------------|-------------|-------------------|
| 제7차 이사회-심의-제1호 | 2025. 9. 1. |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1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방안

□ 의결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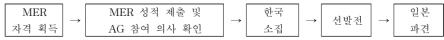
○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 방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8. 18.) 및 2025년도 제7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8. 21.)에서 선수 선발 방안 심의

□ 주요내용

- ㅇ 기본 조건
- 전 종목 선발 선수·말 일괄 국내에서 일본으로 파견(예정)
- 선수는 협회가 지정한 MER자격 제출 기한까지 MER 획득 후, AG 참가의사를 밝혀야 함
- 마장마술 선발전 세부 과목 등 세부 선발 방식 추가 예정
 - ※ OC의 AG 참가요강 조건(MER 자격 조건 및 팀 구성 등) 변동 시 추후 선발 방식이 조정될 수 있음
- ㅇ 선발 일정
- ① MER 자격 제출 및 참여 의사 확인 기한 : 2026년 3월 31일(예정)
- ② 국내 선발전 개최 일정 : 2026년 4월 27일 ~ 5월 3일(예정)
- ③ 현재 체육회의 엔트리 마감일 확정 전으로 <u>확정 후 제출기한 및 선발</u>전 개최일정 최종 확정 공지 계획임
- * MER 대회 참가, 운송 및 검역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늦게 일정 수립 예정
- ㅇ 기본 선발 절차



※ MER 자격 획득 여부 및 선발전 개최 여부에 따라 절차 생략 가능

ㅇ 세부 선발 방안

가. 마장마술

| 선발인원 | 최대 4명 | | | | |
|-----------|---|--|--|--|------------------------|
| 팀 구성 | 기본 팀구성 Big Tour: Small Tour = 2:2 | | | | |
| MER 조건 | 하기의 조건 중 1개를 충족하여야 함 ① MER Big Tour - 2 MERs at 62% at CDI 3* Grand Prix level ② MER Small Tour | | | | |
| 선발 조건 | - CDI1* or above 2 MERs at 62%, PSG and Intermediate PA선 선발 순 1. Big Tour 3명 이상일 경우 Big Tour 국내 선발전 2. Big Tour 2명 이하일 경우 우선 선발, Small Tour에 잔여 TO 추가 3. Small Tour 3명 이상일 경우(잔여 TO 포함 인원보다 많을 경우) Small Tour 국내 선발전 4. Small Tour 2명 이하일 경우(잔여 TO 포함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Small Tour 우선 선발 5. Small Tour 1명 이하일 경우 엔트리 3명 이하 파견 구분 BIG Tour Small Tour MER 충족선수 3명 이상 2명 이하 3명 이상 2명 이하 국내 선발전 실시 선발전 실시 선발전 일명 선발 우선 선발 (TO 증가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우선 선발 주가될 수 있음) 잔여 TO 0 0~2 0 2~1 | | | | |
| 국내 선발전 | | | | | 선 순위 추후 공지) 구 결정 예정 |

나. 장애물

| 선발인원 | 최대 4명 |
|-----------|---|
| 팀 구성 | MER 필요(개인전 155-해외) : MER 불필요(개인전 150-국내) = 1명 : 3명 |
| MER 조건 | ① <u>개인전 155 : MER 필요</u> - CSI2*, 1m45 감점 4 이하 & CSI3*, 1m50 감점 8 이하 - 1m45 또는 1m50를 포함한 CSI1*-W에서도 또한 상기 사항 적용 ② <u>개인전 150 : MER 필요 없음</u> |
| 선발 조건 | ① 해외 선발 - MER 조건 충족 필수 - 3개의 CSI3* 1m50 이상의 대회에 감점 8 이하 성적 제출 - 2명 이상일 경우 3개의 세부 성적에 따라 우선 순위 선발 (우선 순위: 대회등급(*), 높이, 각 Class 감점의 합 순) ② 국내 선발 - 국내 선발전 실시 |
| 국내 선발전 | - 3 Round로 전행 - 1R: 150 / 2R: 150 / 3R: 150 - 1~3 Round의 감점 합계 순 선발, <u>각 Round 감점 8점 이하의 성적만 인정</u> - 선발인원에 동일 감점 선수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에 한하여 재경기 실시 |

다. 종합마술

| 선발인원 | 최대 4명 | | |
|-----------|---|--|--|
| MER 조건 | 1st time Hybrid Format: 3 star Dressage and Jumping Test and 2* Cross-country Proposed MER: No change to current MERs based on 2 star Cross Country = 1 MER at CCI1* | | |
| 선발 조건 | - 2개의 CCI 2*-L MER 성적 기한 내 제출 - 2개 성적의 합으로 선발 우선 순위 부여 | | |

□ 심의결과: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선수 선발방안 원안 승인

심의사항

| 안건번호 | 의결 연월일 | 소관회의 |
|----------------|-------------|-------------------|
| 제7차 이사회-심의-제2호 | 2025. 9. 1. |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2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개정안

□ 의결주문

ㅇ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개정안에 대해 심의 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25. 8. 18.)에서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개정안' 원안 수정 동의
- 대회의 안전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존 '승마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조건 보완에 따른 규칙 전면 개정

□ 주요내용

- ㅇ 경기장 기본 경기 시설(경기장 바닥, 마사 등) 필요 조건 보완
- ㅇ 경기장 부대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필요 조건 보완
- ㅇ 경기장 경기 운영 장비(장애물, 마장마술 목책 등) 필요 조건 보완
- □ 심의결과: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개정안 원안 승인
- □ 별첨[2-1]: 승마 경기장 공인 시행 규칙 전문

심의사항

| 안건번호 | 의결 연월일 | 소관회의 |
|----------------|-------------|-------------------|
| 제7차 이사회-심의-제3호 | 2025. 9. 1. |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3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 의결주문

o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o 2025년도 제6차 스포츠공정위원회(2025. 8. 26.)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수정 동의
- ㅇ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2025. 7. 21.)에 따른 반영
- ㅇ 스포츠공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 지적 지속
- (2024. 9. 25. KBS보도) "점수 조작까지? 충격적인 대한체육회 스포츠 공정위원회 민낮
- (2024. 11. 1. SPOTV 보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정말 불공정할까?
- ㅇ 스포츠공정위원회 선임과정의 공정 및 투명성 강화
-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9제4항('25. 1. 31. 신설, 스포츠윤리센터의 재징계요구에 관한 부분은 '25. 8. 1. 시행)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에 해당 조 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 또는 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 및 재징계요구 직접 가능.
- 정계시효 관련(제25조의2) 체육계 내 지도자에 의한 폭력・가혹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피겨 종목에서 미성년자 선수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신체・정신적 가혹행위가 드러나는 등 유사 사건이 반복 발생
- (2025. 4. 3. 연합뉴스) "피겨 코치, 미성년자 선수 상대로 가혹행위 논란" ··· 성인이 된 피해자가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

[사건내용] 2010~2016년 사이 발생한 지속적 가혹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현재까지 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 중이며, 지도자는 여전히 혐의 부인 및 관련 기관의 미온적 대응 지속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형벌상으로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징계시효)제1항을 살펴보면.

- · 성폭력 및 성희롱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10년
-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등: 5년
- 그 밖의 징계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 대한체육회는「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의2(징계시효)제1항에 따라
- 징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 ▲단체 및 대회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 정, ▲체육 관련 입학비리,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 행위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심의·의결하지 못함
- 이에, 「지방공무원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을 참고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도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연장하고,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징계시효 기산점의 예외를 두어 체육계 정의 구현 및 징계 실효성 강화 필요
- o 제29조(출석요구), 제30조(심문과 진술권) 관련 대한체육회 제3차 스포츠공정 위원회에서 본 회의(스포츠공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징계 소위원회에서도 징계혐의자 및 관계인에 대한 출석요구와 심문을 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 필요함을 의결함
 - (규정 소위원장 의견)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제29조(출석요구), 제30조 (심문과 진술권)의 주체인 "위원회"에 "이하 이 조문에서는 소 위원회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안 제안
- **징계의 정도(제31조제4항) 관련** 대한체육회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미성년자 대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상향은 의결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의결이 보류된 바. 이에 대하여 보완 필요
- 정계의 정도(제31조제4항), 정계 사유 및 대상(제25조) 관련 그동안 체육계 폭력 사건에 대한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 '25.3.29.(토) 태권도(품새) 종목에서 코치가 대회 참가한 여고생 선수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 발생
- (2025. 4. 30. 데일리한국) "맞다가 기절해도 때려" ...태권도 여학생 선수 무차별 폭행한 코치

[사건내용] A양은 얼굴과 어깨, 발목 등이 탈구되고 치아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 진단받음. 다른 피해 학생은 유리 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얼굴을 맞아 시력이 저하됐고, 치아 교정기를 낀 학생은 치아가 갈리는 등 상해를 입음 ○ 특히 지도자 등 우월적 지위에 있는 성인이 미성년자 선수를 폭행하거나 성적인 가해를 범하는 범죄가 끊이질 않는 바, 규정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범죄행위에 대한 징계기준을 높여 스포츠 공정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 또한,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성인)선수들의 인권 보호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조치 병행

□ 주요내용

- o (제4조) 스포츠윤리센터의 장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직접 징 계요구 등 필요한 조치 가능
- (기존) 주무부처 장관이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필요한 조치 요구
- → (변경) 주무부처는 물론 스포츠윤리센터의 장도 조사내용과 관련한 체육회 및 체육회 관계단체에 필요한 조치 직접 요구
- 0 (제5조) 추천위원회 구성에 투명성 강화
- (기존)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
- → (변경) 회장은 외부인사 과반수가 포함된 추천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성 있는 관련 추천단체 명시
- (제25조제9항 신설) 징계기관은 징계혐의자가 제25조제1항제3호(폭력, 성폭력)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시 격리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조치를 통하여 피해자 권익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조치가 필요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 반영
- o (제25조의2제1항 개정, 제25조의2제4항, 제5항 신설) 성폭력 범죄 등 특정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연장 - 「지방공무워법」(제73조의2), 「군인사법」(제60조의3) 등 반영
- ㅇ (제25조의2제3항 신설)
 -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징계시효 기산점 예외 인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34조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1조제1항) 등 반영

- (제29조제1항・제2항・제3항・제7항 및 제30조제1항 개정) 해당 조항에서 "위원회"는 "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할 것을 명시함
- (제31조제4항 신설)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제6호부터 제9호 (폭력, 성폭력, 성희롱, 성추행)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징계 기준 장기의 1/2까지 가중
- o (제34조, 제43조) 문구 명확화, 자구 수정
- o 신·구대조표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제5조 (구성) | 제5조 (구성) | |
| ①~②항 "생략" | ①~②항 "생략" | • 추천위원회의 |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 투명성 강화 |
| 건을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 |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하되, 대한변호사협 | |
| 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회, 한국체육학회, 한국체육기자연맹, 국 | |
| | 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주무부 | |
| | 처 등 관계기관 및 채육회 등의 추천을 받 | |
| | 을 수 있다. 위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 |
| | 한다. <개정 2025. 9. 1.> | |
| |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 | |
| | 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 |
| | 2. 스포츠 또는 법률관련 분야 | |
| 1. 법학자,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 |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 |
| <u>사자</u> | <u>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u> | |
| 2.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 | <u>상 근무한 사람</u> | |
| 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 |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 |
| 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
| 사람 | 4.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 |
| 3.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 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 |
|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u>있는 사람</u> | |
| | ④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 |
| |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부 | |
| |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 |
| ④ 정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 될 수 없다.<개정 2020. 2. 21.> | |
| 해당하는 사람과 문화체육관광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특정 성별 | |
| 부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 | 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 |
| 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0. 2. |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 | |

| 현 행 | 개정(안) | 비고 |
|-------------------------------|--|------------------------------|
| 21.> | 다. <개정 2025. 9. 1.> | |
| ⑤ 위원회의 위원으로 여성이 재 |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 |
| 적 위원수의 20% 이상 포함되도 |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추 | |
| 록 노력하여야 한다. | 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 | |
| | 설 2020. 1. 21.> | |
| ⑥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6호 | | |
|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 | |
| 추천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 | | |
| 다.<신설 2020. 1. 21.> | | |
| 제25조 (징계 사유 및 대상) | 제25조 (징계 사유 및 대상) | 성인이 미성년자 |
| ①~⑦항 "생략" | (1)~(7)항 "현행과 같음" | 선수 대상으로 |
| (신설> | ③ ③ 6 6 7 E 1 ⑧ 징계기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 폭력 및 성적인 |
| | 정계사유의 신고가 있거나 그 정계 | 가해 행위 시 |
| | 사유를 인지한 경우, 즉시 징계혐의자와 | 징계기준 상향 |
| |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고, 이 경우에 | 조정 |
| | 파하지의 의사에 반하거나 피해자에게 | |
| |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 피해자 권익 및 |
| | 필요한 경우 피해지에 대한 전문가의 심리 | 2차피해 보호 |
| | <u> 상담조안치료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u> | |
| | 조치를 취해야 한다:<신설 2025. 9. 1.> | |
| 제25조의2 (장계시효) ① 위원회는 정 | 제25조의2 (징계시효) ① 위원회는 징 | • 지방공무원법, |
| 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 계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다 | 군인시법 등 반영 |
| 년(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 '' | |
| 제9호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 지나면 심의 의결하지 못한다. | |
| 심의·의결하지 못한다. 단, 해당 신 | 단, 해당 신고·접수일로부터 심의· | |
| 고 접수일로부터 심의 의결 전일까 | 의결 전일까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 | |
| 지 기간은 제외하며, 이때 스포츠윤 | 때 스포츠윤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 | |
| 리센터 등이 징계 요구하는 사건의 경 | 는 사건의 경우 그 신고 접수일은 해당 | |
| 우 그 신고·접수일은 해당 징계 요 | 징계 요구기관의 사건 신고 접수일을 그 | |
| 구기관의 사건 신고 접수일이 된다. | <u>날로 본다.</u> <개정 2023. 1. 27. <u>, 2025</u> . | |
| <개정 2023. 1. 27.> | 9. 1.> | |
| | 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 |
|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년 | |
| | <u>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u> | |
| | | I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 |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 |
| | | <u>금지행위</u> | |
| | | <u>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u> | |
| | |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 |
| | | <u>성폭력범죄</u> | |
| | | <u>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u> | |
| | | 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 |
| | | <u>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u> | |
| | | 라.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 |
| | | 제2호에 따른 성희롱 | |
| | |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징계 | |
| | | 사유가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 | |
| | | 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 |
| | | <u>해당하는 경우 : 5년</u> | |
| | | 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 |
| | | <u>경우 : 3년</u> | |
| ② (생략) | | ② (현행과 같음) | |
| | <u><신설></u> | ③ 제1항 제1호 및 별표 1 제6호부터 | |
| | |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징계사유 | |
| | | 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 | |
| | | 인 경우의 징계시효는 제1항에 | |
| | | 도 불구하고, 해당 피해자가 성년 | |
| | | 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신설 | |
| | | <u>2025. 9. 1.></u> | |
| | | ④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 |
| | | 절차 등 절차상의 흠, 징계양정의 | |
| | | 부당을 이유로 위원회나 법원에서 | |
| | | 장계처분의 무효·취소의 결정이나 | |
| | |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 |
| | | <u>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u> | |
| | |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 |
| | |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 |
| | |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정계의결 등을 | |
| | |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5. 9. 1.>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 ⑤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 |
| | 수사중이거나 법원에서 형사재판 | |
| | 중인 사건으로서 제24조의 우선 | |
| | <u>징계처분을 하지 못하여 제1항의</u> | |
| | 징계시효 기간이 지났거나 그 남은 | |
| |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 |
| | 그 수사가 종료되거나 재판이 | |
| | 확정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에 | |
| | <u>징계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본</u> | |
| | 다.<신설 2025. 9. 1.> | |
| 제29조(출석요구) | 제29조 (출석요구) | • 징계소위원회 |
| ① <u>위원회가</u>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 |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 관계인 출석 |
| 할 때에는 위원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 | 이하 제2항, 제3항, 제7항에서도 같다)가 징 | 요구 및 심문권한 |
| 호서식에 따른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 | 계혐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위원 | 부여 검토 |
| 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 회 개최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 |
| 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 | 출석요구서가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 |
| 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출석요 | |
| 를 제외하고는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 | 구서를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 | |
| 의자의 소속단체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 송부하여 전달하게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 |
| 하며, 소속단체의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 | 출석요구서 사본을 징계혐의자의 소속단체 | |
| 에 협조하여야 한다. | 의 장에게도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단체의 | |
| | 장은 징계혐의자의 출석에 협조하여야 한 | |
| | 다.<개정 2025. 9. 1.>_ | |
| 제30조(심문과 진술권) | 제30조 (심문과 진술권) | • 징계소위원회 |
| ① <u>위원회는</u> 징계혐의자에게 혐의내용에 | ① 위원회(징계 심의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 관계인 출석요구 |
|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 <u>이하 이 조에서 같다</u>)는 징계혐의자에게 | 및 심문권한 부여 |
| 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 혐의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 검토 |
| 있다. |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시므하 스 이다. 기계 2025 0 1 > | |
| | 심문할 수 있다 <u>.<개정 2025. 9. 1.></u> | |
| 제31조(정계의 정도 결정) | 제31조 (정계의 정도 결정) | |
| ①~③항 "생략" | │ ①~③항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는 성인인 혐의자가 미성년자를 | • 기계기조 지구 |
| <u><신설></u> | 대상으로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7호 | ● 징계기준 상향 조정 |
| | (그 중 폭행 또는 집단폭행의 경우만 해 | 32.8 |
| | 당한다)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 | |
| |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④ 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기간 중에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 여 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 혐의에 해당하는 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 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정계기준 중 자격정 지나 출전정지의 장기 또는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정계할 수 있다.<신설 2025. 9. 1.> ⑤ 위원회는 혐의자가 정계기간 중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계기준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비위가 경합될 경우 이 중 가장 무거운혐의에 해당하는 정계 기간 또는 액수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되,각 혐의에 대하여 합산한 정계의 기간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 | |
| 제34조(재심의 신청 등) ① 징계혐의자는 산하협회 위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의 신청을 하는 취지 및 이 유와 입증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 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 원회가 1차로 결정한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 체육회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1차 징계 사유가 권익 침해 사안일 경우 피해자 또한 위원회에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7.> ② "생략" ③ <u>위원회</u> 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의결한 다. ④ ~⑥ "생략" | 1차로 결정한 징계사항에 불복하는 | ●문구 명확화 |
| 제43조(규정 재·개정) ① "생략" ②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 제43조(규정 재·개정) ① "생략" ②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은 협회의 이 규정에 우선하며, | •자구 수정 |

| -1 -9 | 2-14.23 | 3 |
|---------------------------|------------------------------------|----|
| 현 행 | 개정(안) | 비고 |
|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 | 해당 단체가 규정을 이 규정에 맞 | |
| 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 | 게 제·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 | |
| 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 | 정과 이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반 | |
| 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 | 드시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 | |
| 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 | 만, 단체의 고유목적 달성과 질서 | |
|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 유지 차원에서 필요하거나 단체의 | |
|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 | 운영 여건상 다르게 하여야할 사 | |
| 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 유가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 |
|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 | 한하여 체육회와 달리 정할 수 있 | |
| 다. | 다. | |
| 〈개정 2023. 1. 27 .〉 | 〈개정 2023. 1. 27.▶ | |
| <u>1. 제5조(위원회 구성)</u> | <u>1. 제5조(구성) 〈개정 2025. 9. 1.〉</u> | |
| 2. 제4조·제28조 (기능 추가 관 | 2. 제4조·제28조 (기능 추가 관 | |
| 련) 〈개정 2023. 1. 27.〉 | 련) 〈개정 2023. 1. 27.〉 | |
|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 | 3. 제25조・제31조・별표 1・별 | |
| 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 표 2 (위반행위 기준 신설 관련) | |
| | | |
| <u>〈신설〉</u> | 부 칙(2025. 9. 1.) | |
| |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 |
| | 시행한다. 단, 제4조제10호 중 스포츠 | |
| | 윤리센터의 재징계 요구에 관한 부분은 | |
| | <u>2025. 8. 1.부터 시행한다.</u> | |

- □ 심의결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개정안 원안 승인
- □ 별첨[3-1]: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전문

심의사항

| 안건번호 | 의결 연월일 | 소관회의 |
|----------------|-------------|-------------------|
| 제7차 이사회-심의-제4호 | 2025. 9. 1. | 2025년도 제7차 이사회 |

4 장애물 심판 자격 부여안

□ 의결주문

○ 장애물 심판 자격 부여안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 2025년도 제3차 심판위원회(2025. 8. 28.)에서 '장애물 Level 2 자격 부여안' 원안 동의

□ 주요내용

○ 심판위원회에서 수습심판 중 Level 2 자격 부여 요건을 충족한 인원에 대하여 『2025년도 장애물 전문 인력 양성 강습회』개최 이후 <u>장애물</u> 수습 심판 평가 시험에서 60점 이상 응시자들에게 장애물 Level 2 자격 부여 의결

○ 장애물 Level 2 심판 자격 부여 대상자

(가나다 순)

| 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소 속 | 비고 |
|----|-----|------|-------------|----|
| 1 | 견O미 | - | 화성홀스파크㈜ | |
| 2 | 고O조 | _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
| 3 | 고O자 | - | 대한승마협회 | |
| 4 | 김О현 | _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
| 5 | 김O철 | -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
| 6 | 김O철 | _ | ㈜토탈바이오 | |
| 7 | 안O철 | _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
| 8 | 오O훈 | - | 제주특별자치도승마협회 | |
| 9 | 윤O경 | _ | 중원대학교 | |
| 10 | 이O아 | _ | 광주승마클럽 | |
| 11 | 이O호 | _ | 전주기전대학 | |
| 12 | 이O리 | - | JK호스트레이닝공원 | |
| 13 | 이O영 | _ | JK호스트레이닝공원 | |
| 14 | 채O훈 | _ | 한국학생승마협회 | |

□ 심의결과: 장애물 심판 자격 부여안 원안 승인